

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- 0361호

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22조에 근거하여 제품 예비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0일
국가기술표준원장

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 공고

1. 취지

-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나노필터 등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에 대하여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안전관리 대상 제품 지정·관리 이전에 예비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한대 중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의 추가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
 - 유해물질(디메틸포름아미드 및 디메틸아세트아미드) 안전요건 및 제품 표시사항

※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(www.kats.go.kr → 고시·공고)

3. 부칙

제1조(시행일) 2020년 12월 1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 부터 적용한다.